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2. 10 선고 2020나34744 판결 [구상금청구소송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2. 10 선고 2020나34744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9. 10 선고 2010가소326386 판결

전문

원고,피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

담당변호사 육삼신

피고,항소인 B

변론종결 2020. 11. 10

판결선고 2020. 12. 10

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9. 10. 선고 2010가소326386 판결

주문

1.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2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청구취지: 피고는 원고에게 5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. 10. 23.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.

항소취지: 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C 주식회사(2009. 12. 18. D 주식회사로 상호변경, 이하 'C'이라고 한다)는 2008.7. 9. 피고와 사이에,E 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 및 창호공사(이하 '이 사건 공사'라 한 다)를 공사금액 363,000,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.

나.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,이 사건 공사에 따른 하자보수의 담보를 위하여 피보험자 C, 보험가입금액 10,890,000원, 보험기간 2008. 9. 30.부터 2019. 9. 29.까지로 정한 하 자보수 이 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.

다. C은 2009 . 2. 17. 피고에게 지붕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,피고는 2009 . 2. 18. 및 2009 . 2. 20. 지붕 판넬과 카본나이트 연결 부위를 실링 처리하는 하 자보수공사를 하였다.

이후 지붕 누수가 다시 발생하자 C은 2009. 3. 2. 피고에게 3차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09. 3. 9. 다시 위와 같은 하자보수공사를 하였다.

이 후 지붕 누수가 다시 발생하자 C은 2009 . 4. 22. 피고에게 재차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추가공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.

라. C은 2009. 5. 28. 원고에게 지붕 누수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 고,원고는 2009.

10. 22. 5,000,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내지 6호증,을 제2, 3, 4호증의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 단

원고는, 이 사건 공사 이후 지붕에서 계속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하자보 수를 거절함에 따라 원고가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,피고는 피보험자의 하자보수비 채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그 보험금 상당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즉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당시 C의 기존 설계에 따라 지붕 시공을 하게 되면 지붕 판넬과 카본나이트 연결 부위에서 누수가 발 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c에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, C은 공사기간의 문제로 이를 거절하고 기존 설계대로 시공하되 지붕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협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, 피고는 그 후에도 C의 하자보수 요구 에 응하면서 지붕에 수차례 실링 작업을 한 적은 있으나,당시 피고의 의사는 지붕 누수를 막기 위한 실링 처리 등 간단한 작업만 해주겠다는 것이지,다른 추가적인 보수 공사까지 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었던 점,원고가 C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견적금액은 실링 작업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공사를 전제로 산정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따 른 지붕 누수에 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.

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정 원판사 김유성판사 최은주